

#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 공급 (26세대)

대상주택	· 전용 85㎡ 이하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											
	구분		49A	49B	59A	59B	74A	74C	74D	74E	74F	합계
	장애인	서울시	1	2	-	1	-	-	-	-	-	4
		인천시	1	1	-	1	-	-	-	-	-	3
		경기도	1	2	-	-	-	-	-	-	-	3
	국가유공자	1	1	-	1	-	-	-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2	1	-	-	-	-	-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2	-	1	-	-	-	-	-	4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	-	-	1	1	-	5	
	합계	7	11	2	4	-	-	1	1	-	26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추천기관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장애인	서울시청(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장애인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군복지단 [복지사업과]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처 [서울북부지방보훈청 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 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 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공급함.